

<p>한다.</p> <p>제5조(주민공개에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2. 시설공사, 물품의 제조 및 구매,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3.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동을 저해하는 사항 <p>제6조(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) 시장의 결위,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, 신임시장은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한다.</p> <p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원의 사기양양 및 심신수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공무원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(이하 “수련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) 수련원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.</p> <p>제3조(업무) 수련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련원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 2. 수련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<p>제4조(원장) ① 수련원에 원장 1인을 두고, 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 ②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제5조(공무원) 수련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 환경관리실(환경보전과) 사무명란 제6호가목중 “운행차의 수시점검”을 “운행차의 수시점검(단,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)”로 한다.</p> <p>별표 도로국(도로계획·도로관리과) 사무명란 제2호중 “일반터널의 구조·안전관련사항”을 “일반터널”로 하며, 사무명란 제5호중 가목,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가목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종전 조례 별표(도로계획·도로관리과) 사무명란 제5호중 가목 가로청소사무의 경우는 '97.6.30까지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호중 “2,543명”을 “2,538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4호중 “9,736명”을 “9,754명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본청의 감축정원 5명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종전 조례 별표(도로계획·도로관리과) 사무명란 제5호중 가목 가로청소사무의 경우는 '97.6.30까지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설치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환경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·단체 등에 서울특별시환경상(이하 “서울환경상”이라 한다)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